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7. 16(화)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7월 3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7월 9일
- 다. 상 정 일 자 :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2002. 7. 15)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 제안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보완임

나.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 관련】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000읍(면·동)주민자치센터”로 통일(안 제4조)
- 지역사회진흥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안 제5조)
-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를 소속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분담 수행(안 제7조)
-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안 제7조)

(제55회 - 제4차 본회의)

-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요율, 감면, 징수,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가입(안 제11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 위원회의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안 제15조)
-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안 제17조)
-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 위촉(안 제17조)
- 각 분야별 균형 있는(분야별 1/3이상 초과 금지) 위원 위촉(안 제17조)
-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안 제17조)
-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무화(안 제18조)
- 고문을 포함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 위원회의 회의소집 권한 위원장에게 부여(안 제21조)
- 고문 및 읍·면·동장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함(안 제2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해수)

- 본 조례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제52차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 시행된 조례로서, 그동안 시범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과 자치센터설치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보완하고 또한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요건 위촉과 해촉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의원 당연직 고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읍·면·동장이 위촉 및 해촉 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제5항과 안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을 읍·면·동장이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을 요하는 조문》

1. 안 제17조 제5항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를 “당연직 고문은 읍.면.동장이 추대하되” 로 하고,

2. 안 제20조 제1항

“해촉할 수 있다” 를 “추대를 해지할 수 있다” 로 수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일부 수정의결(만장일치)

7.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의 6인 제출

나. 수정이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개정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도입은 시의원으로써 주민자치 참여가 선택적 참여사항이 아닌 필연적인 의무적 참여사항임에도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관련 조문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5회 - 제4차 본회의)

다. 수정 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중 새로이 도입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안제17조 제1항, 제5항)
- 당연직 고문에 대하여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안제20조 제1항)

8. 기타사항 : 없 음

- ※ 첨부 : 1. 이천시주민자차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92호 관련
----------	---------

제안년월일 : 2002년 7월 15일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 외 6인)

1. 수정이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개정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도입은 시의원으로써 주민자치 참여가 선택적 참여사항이 아닌 필연적인 의무적 참여사항임에도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관련 조문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중 새로이 도입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안제17조 제1항, 제5항)
- 당연직 고문에 대하여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안제20조 제1항)

(제55회 - 제4차 본회의)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7조 제1항중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로 한다.

안제20조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